

대한민국 정부와 조지아 정부 간의  
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

## 서문

대한민국(“한국”) 정부와 조지아(“조지아”) 정부는(이하 공동으로 “양 당사국” 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“당사국” 이라 한다),

양국의 오랜 기간 이어져 온 강한 동반자 관계와 양국의 경제 협력 및 무역 관계를 확대하기 위한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을 인정하고,

이 협정이 확장되고 안전한 상품 및 서비스 시장과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무역 관계 환경을 창출하여, 양국 기업의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임을 확신하며,

경제성장을 증진하고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하며 생활수준을 높이고 공공복지를 향상하기를 희망하고,

이 협정을 통하여 양국의 무역을 규율하는 명확하고 상호 유익한 규칙을 제정하고, 국제법에 합치되게 양국 간 무역에 대한 장벽을 축소하거나 철폐할 것을 추구하고,

기업들이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, 무역과 투자에 추가적인 확대를 지지하는 예측 가능하고 투명하며 일관된 사업환경을 증진하고,

이 협정을 통하여 무역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세계무역의 조화로운 발전과 확장에 기여할 것을 약속하며,

민간 부문을 포함한 모든 관련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투명성을 증진할 것을 결의하고,

양 당사국이, 이 협정에 반영된 대로,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보호 수준에 근거하여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부당한 차별 또는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의 수단을 구성하지 않는 한, 그러한 조치를 할 양 당사국의 권리를 인정하며,

「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」과 양 당사국이 모두 당사자인 그 밖의 다자, 지역 및 양자 협정상의 그들 각자의 권리 및 의무에 기초하여,

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.